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로 변경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0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로 변경 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 (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7.

다.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 중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감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당초 도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 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로 변경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
(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현 행	개 정 안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 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이 <u>온실가스 감축</u>에 미치는 효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노력 규정 <신 설> <신 설> - 예산(기금)이 <u>온실가스 감축</u>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u> 작성·제출 - <u>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u>기금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로 변경 등 - 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이 <u>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u>에 미치는 효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노력 규정 - <u>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연계하여 수립</u> - <u>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 수립·이행</u> - 예산(기금)이 <u>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u>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u>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u> 작성·제출 - <u>기후위기대응 결산서(기금결산서)</u>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제도”¹⁾가 도입되어 2008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1)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결산제도”²⁾가 도입되어 202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음.

개정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라 함)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이하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서”라 함)로 변경하고, 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사업 선정 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칠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임.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배출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포함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2)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일한 사업에서 온실가스의 감축과 배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개축·리모델링 시공하는 사업³⁾이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냉난방기기 보급 사업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계산하고 시설 개축공사나 냉난방기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⁵⁾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도 분석한 보고서인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배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에서는 ‘기후변화’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

3)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1604-300)’

4) 국토교통부의 ‘친환경물류지원 사업(4034-301)’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하여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⁶⁾ 이상기후 현상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0년(1991~2020년) 연평균기온이 과거(1912~1940년)에 비해 약 1.6℃ 상승하여 전 지구 평균 기온상승(1.09℃)보다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⁷⁾

따라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국가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또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중립

6)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011~2020년 전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1.09℃ 상승(IPCC AR6, '21)

7) 제3차(2023~2025)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6.) 등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⁹⁾

[(참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3. 환경·에너지·국토·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시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면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된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 지침의 부록(3-1)에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음.¹⁰⁾ 즉,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이미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근거로 선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제도로 변경하면서 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 선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할 것을 명시하여 강조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행 시행령 기준 40%)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

10) 11개 감축사업 유형 역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10개 부문 + 기타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음.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정할 때 상술한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의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¹¹⁾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별 부처별·사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
-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예·결산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서는 온실가스 감축 외에 배출 효과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명칭으로 인해 해당 보고서가 감축에 한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서’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그러나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탄소감축인지, 기후변화인지 등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정량적 성과평가 가능성, 사업범위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측면을 감안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로 합의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는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부터 작성된 것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¹²⁾이 있는 등¹³⁾ 아직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도입 초기 단계라고 보임.

따라서, 기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와 같이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거친 후 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¹⁴⁾¹⁵⁾

12) 현행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으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경우 관련 내용이 없음

1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보고서’(p.73) 등

14) 기획재정부도 기후인지의 개념이 모호하여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이 현재 온실

셋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 2031~2049년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등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음.¹⁶⁾¹⁷⁾

따라서, 2031~2049년의 감축목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동 조항의 개정을 지켜본 후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국가재정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스 감축사업에서 전체 예산사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대상사업이 광범위하여 제도가 형식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성 대상사업의 명확화 및 계량화가 용이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로 합의하였으므로, 당초 입법 취지 및 해당 제도가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작성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환경부도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023년도 예산안부터 도입되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의 고도화 등 제도 안착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후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으로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배출사업 분류 및 배출량 산정 기준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9,000개 이상의 국가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과도한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6) 단,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2.28.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17)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에서는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한다고 규정하였음. 개정안의 내용이 예산(기금)이 특정 사안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도록 하는 ‘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이며, 양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안에서도 ‘기후위기대응’을 ‘기후위기대응인지’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u>온실가스감축인지</u>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기금 및 조세감면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u>기후위기대응인지</u>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기후위기대응인지</u> 예산제도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문별감축목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와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 기후위기대응 예·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의 경우에만 ‘기후변화적응’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되어 있음. 기금운용계획서의 경우에만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정안 내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¹⁸⁾

[개정안 중 기후변화 관련 개정내용]

현행
제27조(기후위기대응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u>기후변화</u> 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위기대응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u>기후변화</u> 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기후위기대응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u>기후변화</u> 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위기대응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대응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u>기후변화</u> 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의3(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u>기후변화</u> 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u>기후변화적응</u> 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3(기후위기대응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u>기후변화</u> 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위기대응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대응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u>기후변화</u> 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되어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기금 및 조세감면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원칙)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감축과 배출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이하 “기후변화”라 한다)에----- ----- -----.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제27조(기후위기대응 예산서의 작성) ①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기후위기 대응----- -----. ② 기후위기대응-----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 -----. ③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u>온실가스감축인지</u>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9. (생략) 9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예산서 10. ~ 16. (생략) 제57조의2(<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u>온실가스감축인지</u>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의3(<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④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u>기후위기대응</u>----- -----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기후위기대응</u>----- 10. ~ 16.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u>기후위기대응</u> 결산서의 작성) ① ----- <u>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u>----- -----<u>기후위기대응</u>----- -----. ② <u>기후위기대응</u>----- -----<u>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u>----- -----. 제68조의3(<u>기후위기대응</u>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

현행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 --기후위기대응----- -----. ② 기후위기대응-----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적응에----- ----- -----. ③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위기대응----- ----- -----.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

현행	개정안
(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6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운용계획서 7. (생략) 제73조의3(<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u>감축하는</u>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u>온실가스감축인지</u>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기후위기대응</u>----- 7. (현행과 같음) 제73조의3(<u>기후위기대응</u>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 -<u>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u>----- -----<u>기후위기대응</u>----- ----- -----. ② <u>기후위기대응</u>----- -----<u>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u>----- -----.

문의처

02)6788-5153

